

의안번호	제 73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4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사무명 변경, 오기 사항 정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신 설: 22건 (별표 1)

-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9건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보고·검사 등’,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의견제출’,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집행 및 비용징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9건

-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보고·검사 등’,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방치폐기물의 처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청문’,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1건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의 접수’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3건

- ‘보고와 검사 등’, ‘연차보고서의 제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 제: 7건(별표 1)

-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중 다음 사무 1건
  - ‘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준공검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건
  -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고탄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4건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탄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탄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다이옥신 검사결과·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건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그 밖의 개정사항: 6건(별표 1)

- 위임사무명 개정: 4건
  -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2건
    - 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 수리 →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 →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 사무(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사무(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에 한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 근거 법조항 개정 : 1건
-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에 관한 업무 법 조항 개정
  - 과 명칭 개정 : 1건
- 민간협력공동체과 → 공동체협력과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 정 담 당 관	1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자 연 재 난 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 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야.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 이 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 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건을 추가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제7항
	11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	같은 법 제38조제1항
	14	·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4항
	15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6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7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18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9	· 지방하천에서 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20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1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 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2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76조
	2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 등의 사용· 수용	같은 법 제78조
	24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 검사	같은 법 제90조
	25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 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6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7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8	·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29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0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1	·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2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3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34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공동체 협력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li> <li>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li> <li>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li> <li>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li> <li>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li> <li>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li> </ul>	<p>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p>
회 계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li> </ul>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li> </ul>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p>
복 지 정 책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li> </ul>	<p>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li> </ul>	<p>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li> </ul>	<p>같은 법 제18조제7항</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li> </ul>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24조</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li> </ul>	<p>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1조</p>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 사항</li> <li>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li> <li>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li> <li>다. 의료서비스의 제공</li> <li>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li> <li>마. 위생지도</li> <li>바. 장사의 지원</li> </ul>	<p>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p>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li> </ul>	<p>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정 책 과	1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식 의 약 안 전 과	1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바. 마약의 소매 보고  사. 행정처분  아. 청문 자.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차.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카. 몰수마약류의 폐기·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53조
경 제 기 업 과	1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3	<p>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p> <p>·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p>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p>
	4	<p>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p> <p>·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 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p>	<p>같은 법 제78조제4항</p> <p>전기사업법 제71조</p>
	5	<p>·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 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p> <p>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p> <p>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p> <p>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p> <p>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p> <p>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자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 정정요구</p> <p>사. 보고 및 조사 등</p> <p>아. 개선명령</p>	<p>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p> <p>제13조, 제6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제52조</p>
	6	<p>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p> <p>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p> <p>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p> <p>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p> <p>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76조</p> <p>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p>
	7	<p>·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 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p> <p>나. 보고 및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p>
	8	<p>·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p>	<p>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제3항</p>
	9	<p>· 발전설비(송배전부분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사항</p> <p>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p>	<p>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p>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p> <p>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p> <p>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p> <p>마. 전기사업 허가취소 청문</p> <p>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사. 공사 신고의 접수</p> <p>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p>	<p>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p> <p>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p> <p>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61조제4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p>
농업 정책과	1	<p>·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p>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유기 농산과	1	<p>·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p>	농어촌정비법 제9조
	2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같은 법 제17조
	3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같은 법 제24조
	4	<p>· 다음 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p>	같은 법 제26조
	5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수산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li> <li>·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li> <li>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li> <li>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li> <li>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li> <li>마. 보호비용 청구</li> <li>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li> <li>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li> <li>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li> </ul> </li> </ul>	<p>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p> <p>동물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p>
문화예술 산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li> <li>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li> <li>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li> </ul> </li> </ul>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p> <p>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p>
건축 문화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li> <li>·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li> </ul>	<p>주택법 제16조</p> <p>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p>
균형 발전과	1 2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li> <li>·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li> <li>·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li> <li>· 기반시설 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li> <li>나. 주차장</li> <li>다. 궤도</li> <li>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li> <li>마.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li> <li>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li> <li>사. 공동구</li> </ul> </li> </ul>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p> <p>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p> <p>같은 법 제30조, 제50조</p> <p>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아. 공공공지 자. 수도공급설비 차. 전기공급설비 카. 가스공급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열공급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더. 문화시설 러. 연구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청소년 수련시설 어. 유수지 저. 방화설비 처. 저수지(댐 제외) 커. 방풍설비 터. 방수설비 퍼. 사방설비 허. 방조설비 고. 하수도 노. 도축장 도. 장사시설 로. 종합의료시설 모. 폐차장 보.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하천(소하천에 한함) 초.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6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7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8조, 제53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
	1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부터 제91조
	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2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도시개발법 제4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6조
	13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14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제16조의2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관 형 발 진 과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 로 과	1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원상회복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91조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  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40조제4항
	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9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10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5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6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li> <li>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li> <li>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li> <li>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li> <li>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li> <li>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li> <li>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li> <li>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li> </ul> </li> </ul>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자동차관리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p> <p>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20조, 제21조</p> <p>같은 법 제27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li> <li>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li> <li>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li> <li>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li> <li>마.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li> <li>바. 등록번호표의 반납</li> <li>사.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 등</li> <li>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li> </ul> </li> </ul>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p> <p>자동차등록령 제31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같은 법 제3조, 제5조</p> <p>같은 법 제6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의2</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1조</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li> </ul>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li> </ul>	<p>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p> <p>같은 법 제34조의2</p> <p>같은 법 제35조의2</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5	· 자동차의 사용정지	같은 법 제89조
	6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나. 사용약관 인가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라.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마. 위치의 변경	같은 법 제43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지 및 폐지	같은 법 제48조
		사. 재정지원, 조합감독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같은 법 제53조
		자.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같은 법 제54조
	차. 정관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56조	
	카. 청문	같은 법 제86조	
7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 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같은 법 제55조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같은 법 제56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같은 법 제56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8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바. 사업의 양도· 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35조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아. 사업의 휴지· 폐지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 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	
	차. 청문	같은 법 제86조	
	카. 과징금부과· 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 시행	같은 법 제8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정 책 과	9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같은 법 제22조제1항
	10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및 차량 초과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11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면허·등록</p> <p>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개시기간연장 승인</p> <p>다.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p> <p>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p> <p>마.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및 신고 수리</p> <p>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p> <p>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p> <p>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p> <p>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p> <p>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p> <p>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p> <p>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p> <p>파. 청문</p> <p>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p> <p>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p>	<p>같은 법 제4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제1항</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9조제2항</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86조</p> <p>같은 법 제88조</p> <p>같은 법 제94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li> <li>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li> <li>나.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li> <li>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li> <li>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li> <li>마.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li> <li>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li> <li>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li> <li>아. 보고·검사 등</li> <li>자.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li> <li>차.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li> <li>카.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li> <li>타.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li> <li>파.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li> <li>하. 폐기물 처리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li> <li>거. 폐기물 반입정지명령</li> <li>너.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li> <li>더. 의견제출</li> <li>리. 과징금의 부과·징수</li> <li>머. 대집행 및 비용징수</li> <li>버. 청문</li> <li>서. 과태료의 부과·징수</li> <li>어.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li> <li>저. 허가증의 재교부</li> <li>처.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 제25조</li> <li>같은 법 제25조의3</li> <li>같은 법 제27조</li> <li>같은 법 제28조</li> <li>같은 법 제32조제4항</li> <li>같은 법 제33조</li> <li>같은 법 제37조</li> <li>같은 법 제39조</li> <li>같은 법 제39조의2</li> <li>같은 법 제39조의3</li> <li>같은 법 제40조</li> <li>같은 법 제45조</li> <li>같은 법 제46조</li> <li>같은 법 제46조의2</li> <li>같은 법 제47조의2</li> <li>같은 법 제48조</li> <li>같은 법 제48조의2</li> <li>같은 법 제48조의5</li> <li>같은 법 제49조</li> <li>같은 법 제61조</li> <li>같은 법 제68조</li> <li>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li> <li>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li> <li>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li> <li>같은 법 제25조,</li> <li>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li> <li>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li> <li>나.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li> <li>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li> <li>라.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li> <li>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li> <li>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li> <li>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li> <li>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li> <li>자.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li> <li>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li> <li>같은 법 제13조의2</li> <li>같은 법 제21조, 제22조</li> <li>같은 법 제23조</li> <li>같은 법 제25조, 제26조</li> <li>같은 법 제27조</li> <li>같은 법 제28조</li> <li>같은 법 제29조</li> <li>같은 법 제30조</li> <li>같은 법 제31조, 제33조</li> </ul>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후 대 기 과	6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7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8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9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
	10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같은 법 제38조의2
	11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38조의3 같은 법 제68조
	12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13	·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4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 <b>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b>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5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의2
		나.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29조
		라. 연차보고서의 제출	같은 법 제37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15	·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6	<p>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p> <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p>	<p>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p>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p>
수 자 원 관 리 과	1  2  3 4	<p>·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p> <p>·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p> <p>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p> <p>·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p> <p>·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한</p> <p>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p>	<p>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p> <p>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p> <p>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3항</p> <p>같은 법 제42조</p> <p>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82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 지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li> <li>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li> <li>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li> </ul> </li> </ul>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li> <li>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li> <li>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li> </ul> </li> </ul>	같은 법 제13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li> </ul>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li> <li>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li> <li>다. 복구비의 예치 등</li> <li>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li> <li>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li> <li>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li> <li>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li> <li>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li> <li>자. 복구비의 반환</li> <li>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li> <li>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li> <li>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li> </ul> </li> </ul>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li> </ul>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관계 법령

## 공통사항

###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사무 관련 법령》

### 농업정책과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2. 24.>

####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207.	마을만들기
208.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209.	농촌다움 복원
210.	농촌현장포럼
21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212.	농촌 재능나눔
21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1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 환경정책과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

## 《위임사무 관련 법령》

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④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 《위임사무 관련 법령》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 《위임사무 관련 법령》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 《위임사무 관련 법령》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같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위임사무 관련 법령》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위임사무 관련 법령》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사무 관련 법령》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 《위임사무 관련 법령》

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9. 4. 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 《위임사무 관련 법령》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

## 《위임사무 관련 법령》

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5. 12. 1., 2016. 12. 27.>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 《위임사무 관련 법령》

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

## 《위임사무 관련 법령》

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 6. 12.>

4. 삭제 <2013. 6. 12.>

5. 삭제 <2013. 6. 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 6. 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 6. 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6. 12., 2019. 4. 16.>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 《위임사무 관련 법령》

-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위임사무 관련 법령》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방법·사항·조건, 변경신고의 절차·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위임사무 관련 법령》

### 기후대기과

####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사무 관련 법령》

④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④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삭제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 2. 1.]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 《위임사무 관련 법령》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